

단체협약 갱신(안)

구	개정(안)	비고
제11조(조합전임자)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조합전임자의 수와 처우는 노사합의로 정한다	제11조(조합전임자)①회사는 조합원이 조합업무에 전임하는 것을 인정한다. ②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전임자수는 현 한도를 유지하고 별도 소수노동조합의 활동보장을 위한 전임자를 배정한다. ③조합전임자의 수와 처우는 별도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26조(근속승진 대우) ①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속승진을 실시하며 임용은 근속 기간이 경과한 날 익월 초일로 한다. 1. 부장대우 : 차장에서 8년이상 근속한자 2. 차장대우 : 과장에서 8년이상 근속한자 3. 과장대우 : 대리에서 6년이상 근속한자 ② 대우승진 보상금은 승진임금 인상금액의 50%을 적용한다.	신설 근속승진 대우제 도입
제26조(휴직) ~ 제26조의 3(창업지원휴직)	제27조(휴직) ~ 제27조의 3(창업지원휴직)	조문변경
제26조의4(가족돌봄휴직)회사는 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 연간 최대 90일 이하의 가족돌봄휴직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제27조의4(가족돌봄휴직) 회사는 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 연간 최대 120일 이하의 가족돌봄휴직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조문변경 90일 → 120일 확대

제27조(육아 및 불임휴직) ~ 제30조(면직)	제28조(육아 및 불임휴직) ~ 제31조(면직)	조문변경
	제32조(희망퇴직) ①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최초로 도달한 직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시킬 수 있다. 단, 노사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시행한다 ②중대한 공상 및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심사를 통해 퇴직시킬 수 있으며, 이때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신설
제32조(포상) ~ 제48조(퇴직금 수령권자)	제33조(포상) ~ 제49조(퇴직금 수령권자)	조문변경
	제50조(희망퇴직금) ①회사는 제32조 ①항에 의한 희망퇴직자에게 기준연봉월정액의 32개월분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회사는 제32조 ②항에 의한 퇴직자는 기준연봉월정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희망퇴직금을 지급한다. 1. 정년퇴직일 5년 이내 : 매 2월당 1월 2. 정년퇴직일 5년 초과 ~ 10년까지 : 5년까지의 잔여월수 + 매 4월당 1월	신설
제50조(퇴직금 지급시기) ~ 제114조(사회적책무)	제51조(퇴직금 지급시기) ~ 제62조(유급휴일)	조문변경
제62조(휴가)①	제63조(휴가)	조문변경
② 제1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호의 휴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연차휴가	1. 연차휴가	
	1의3(휴직자 연차휴가 이월)하반기 복직자 중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2. 공가 가. 나. 다. 라. 마. 7. 특별휴가 :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년퇴직 3월전부터 퇴직 시 까지 3월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63조(연차휴가수당) 제66조(여성과 연소자 근무)	희망자에 한하여 복직년도 발생연차의 50%까지 다음해 상반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공가 가. 나. 다. 라. 마. 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 건강검진을 할 때 7. 특별휴가 : 회사는 조합원에게 정년퇴직 전 3월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u>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한다.</u> 제64조(연차휴가수당) 제64조 2(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조합원 연차휴가수당) 회사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조합원에게 연간 7일 이내 잔여 연차에 대한 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단, 퇴직하는 해는 최소 7일은 보장한다. 제 66 조(여성과 연소자 근무) ③ 임신 후 12 주 이내 또는 36 주 이후에 있는 여성 조합원은 1 일 3 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반영 건강검진 신설 할 수 있다 → 한다 조문변경 신설 14.3.24 근로기준법 제74조 신설 기 반영 (2시간→3시간)
--	---	---